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37 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강선영·김종양·김상훈

유영하 • 고동진 • 강대식

박준태 · 최수진 · 이헌승

나경원 · 김용태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모든 국민은 근로나 복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 효율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휴가는 민간·공공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. 특히 휴가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토요일·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을 고려하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이며, 군에서도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령에서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어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,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현행법령은 격무에 대한 위로휴가, 공적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

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 대한 휴가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관 등에게 그간의 직무수행에 대한 격려 및 차후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줄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, 지휘관이 교체된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휘관 등의 직책 수행에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.
- ④ 50명 이상의 실병력을 지휘한 지휘관(대대장 및 중대장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, 해당 지휘관을 보좌하여 대대·중대의 행정·보급 관리를 담당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은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가의 휴일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휴가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휴가 등의 보장) ①・②	제18조(휴가 등의 보장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
	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
	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가
	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
	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
	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50명 이상의 실병력을 지휘
	한 지휘관(대대장 및 중대장을
	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	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,
	해당 지휘관을 보좌하여 대대
	·중대의 행정·보급 관리를
	담당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직
	책위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
	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은 근무지
	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에 소요
	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
	<u>내로 한다.</u>